

의안번호	2204505
의 퇴 인	유상범의원
회 답 일	2024.
추계번호	24D4193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항 신설	법제처장은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통해 법령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9조(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제2항	법제처장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통해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9조(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제3항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원활한 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상호협력 방안, 법령정보의 정확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항 신설	미대상: 법제처는 일반국민이 일상용어나 문장, 질문을 통해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¹⁾
2	안 제9조(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제2항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9조(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제3항	미대상: 법제처는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법령정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개정안에 따라 협의체에 민간이 참여하더라도 회의 개최에 따른 수당 및 안전검토비, 인쇄비 등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어 기존 예산 범위 안에서 충당 가능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²⁾

1) 법제처 2024년 예산 기준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의 내역사업인 '국가법령정보 통합 구축 및 서비스'에서 지능형 법령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12억 2,800만원을 편성함

2. 상세 사유

□ 사업자 지원(안 제9조제2항)

- 개정안에 따라 법제처장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통해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법령정보의 제공, 기술개발의 지원, 사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통해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지원규모 또한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

2) 법제처 2024년 예산 기준 법령정보협의체 일반수용비 675만원(법령정보협의회 개최 안건 인쇄 및 자문료 400만원, 민간 기술지원 간담회 개최 안건 인쇄 및 자문료 275만원), 임차료 1,100만원(법령정보협의회 임차료 800만원, 민간기술지원 간담회 임차료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